

윤락행위 처벌조항 강화

男女모두 1년이하징역

「미성년에 강요한 5年、無期」 신설

모사부 개정시안

모사부는 6월 윤락행위 처벌시유령안과 그 상과 방 모두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은 특히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유령행위를 유인하거나 유령행위상수를 제공한 포주에 대한 처벌조항도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윤락행위자를 직업보도시설에 수용해 10개월간도에서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 그동안 인입제한해오던 노랑이 패션을 윤락노의 보호시설수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모사부는 이번 개정시안에 대한 여론조렴과정을 거쳐 오는 8월말까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